

 공정거래위원회 www.ftc.go.kr	보 도 자 료		튼튼한 기업, 활기찬 시장, 행복한 소비자
	보도일시	2009.3.16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 (방송·인터넷매체는 전일 낮 12시)	
담당부서	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		담당자
배포일시 2009. 3. 13.(금)	과 장 조근익 (02-2023-4501) 서기관 나양주 (02-2023-4509)		

못 받은 하도급 대금이 있으십니까? ‘하도급119’가 긴급 출동합니다!

- 공정위,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비상조사반(T/F) 운영 -

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백용호)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'09.2.1일부터 비상조사반(T/F) “하도급 119”를 구성하여 가동 중

○ ‘하도급119’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성되었으며,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

* 공정위는 매년 현금수요가 많아지는 설날·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,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‘하도급 신고센터’를 운영하고 있음

□ 전담반은 서기관(하도급개선과 소속)을 팀장으로 하고, 본부(5명)와 5개 지방사무소(6명)를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

⇒ 지난 1달 동안 하도급대금 지급액 32억2,900만원(수혜업체 : 32개 중소기업)

<구성 배경>

□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늘어나는 추세

- 특히, 원사업자가 공공발주공사에서 국가·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, 정작 하도급업체에게는 5~6개월 장기어음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자주 제기

<주요임무>

- 공공발주자와 연관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, 장기어음 발행 등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
-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문제를 제기한 신고사건 중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

<기대효과>

- 원사업자에게는 경기불황을 틈타 고의로 하도급대금(어음할인료, 지연이자 포함)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됨
- 하도급업체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으로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<“하도급 119” 상담 전화 >

-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(02)2023-4010
하도급개선과 (02)2023-4507~9
-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(02) 3140-9669, 9683
부산사무소 (051) 460-1040
광주사무소 (062) 975-6805
대전사무소 (042) 472-1384
대구사무소 (053) 745-9213